

연구보고서 2009-4

#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2009. 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 Policy



연구진

---

이 종 광 연구위원

박 승 국 책임연구원

이 보 라 책임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 간 사

건설산업은 하도급 비중이 높아 원·하도급지간 거래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은 계약체결, 대금지급, 공사수행, 사후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확보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야는 ‘하도급대금의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잘 주고받는다는 점은 건설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하수급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별 프로젝트의 성패나 기업의 생사까지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설공사의 수요자인 발주자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 검토하고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촉진하는 방안, 하도급공사의 원가에 4대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하도급대금 지급 및 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하수급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종광 연구위원 · 박승국 책임연구원 · 이보라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과정에서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 가톨릭대학교 김관보 교수님, 법무법인 한울에서 건설클레임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황문환 박사님, 그리고 자문과 면담에 임해주신 건설업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09년 9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영

## 1. 서론

-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내용중 하도급대금의 지급 과정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여전함에 따라 하도급불공정거래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제도분석,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및 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하도급대금지급에 관한 제도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제도를 조사하고 거래실태를 파악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하도급대금의 지급실태 및 문제점

- 선급금의 부당한 사용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공사의 현장에 노임 및 자재 확보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 또는 타 현장에 전용해서 사용함으로써 하수급인은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 선급금 수령에 대한 일부 하도급 건설업체의 소극적 자세
  - 선급금 신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경영상 부담, 계약체결시 사전에 선급금 지급 배제, 수급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예 선급금의 미신청 등 일부 하수급인들이 선급금 신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원하도급간 기성주기 불일치

- 수급인은 발주처에 월 1회 기성 청구할 수 있지만 기성검사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실제로는 분기마다 기성을 수령하므로, 수급인의 기성주기는 3개월이고, 하수급인의 기성주기는 1개월 임 차이나는 기간동안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어음으로 발행하고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하수급인은 이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됨

○ 4대 사회보험금 미지급 및 미지급에 대한 차별조항의 부재

- 4대 보험료는 별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내역 서상 일반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차별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불공평한 사후정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과다 계상되어 지급된 보험료의 불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하수급인이 납부한 보험금액보다 수급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많으면 과다 계상된 금액만큼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반대로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액보다 부족했을 경우 하수급인의 부족한 보험료 차액을 사후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형평을 잃고 있음

### 3. 개선방안

#### 3.1 하도급대금지급제도 개선방안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 감독 강화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의 지급요령중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 수급인의 약식기성시 기성산출을 공정보고로 대체
  - 수급인의 기성금 최소 지급주기인 '30일 이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의 '기성검사 3회마다 정식기성검사 1회 실시'의 규정중 2회 약식기성의 간소화를 통해 기성신청시 공정보고로 기성산출서류를 대체함
- 수급인의 기성검사 및 대금신청 시기의 일원화
  - 현재 2단계로 되어 있는 기성검사와 대금 신청 시기를 기성 또는 준공검사 조서에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3.2 보험료 지급제도 개선방안

- 4대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 보험료 미지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추가하여 보험료 지급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함
- 4대보험료 미지급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으로 간주
  - 하도급법 제11조제2항제8호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사유에 기존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항목을 추가로 명시하여 법적인 4대보험료 미지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며, 미지급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행위로 간주하여 보험료의 별도 지급과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정산조항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산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부족할 경우에 대한 정산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지출된 경우에도 그 부족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4대보험 별도 항목으로 표기

- 건산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급계약서에서 명시하여야 하는 항목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항목을 추가로 명시함 또한 기존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율의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상향 조정 필요

- 현행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되고 있는 수수료율은 신용등급별 실제 보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준하는 수수료율로 인상되어야 할 것

- 지급보증 면제자에 대한 기준의 상향조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면제 업체 기준을 신용등급 최상위 등급의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성립 요건의 완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성립 요건을 수급인이 당좌거래 정지, 파산을 당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금지급기일 또는 계약이행 기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간 역시 연장되어야 할 것임

#### 4. 향후 연구방향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과 더불어 하도급가격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금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확대 및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확대 등 하도급대금 지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져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발주자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의 건전한 원·하도급 관계가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확산이 중요함

## - 목 차 -

<b>제1장 서론</b> .....	<b>1</b>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	4
<b>제2장 하도급대금에 관한 제도</b> .....	<b>6</b>
2.1 선급금·기성금·준공금 .....	6
2.1.1 선급금 .....	6
2.1.2 기성금 및 준공금 .....	7
2.2 4대 사회보험 .....	12
2.2.1 4대 사회보험의 개요 .....	12
2.2.2 고용보험 .....	17
2.2.3 산업재해보상보험 .....	19
2.2.4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	21
2.2.5 종합 .....	23
2.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	25
2.4 미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	29
2.4.1 밀러법 .....	29
2.4.2 기술자유치권(Mechanics's Lien) .....	34
<b>제3장 하도급대금의 지급실태 및 문제점</b> .....	<b>35</b>
3.1 조사개요 .....	35
3.2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및 문제점 .....	36
3.2.1 선급금 .....	37

3.2.2 기성금 및 준공금 .....	39
3.2.3 문제점 .....	43
3.3 보험료 지급실태 및 문제점 .....	46
3.3.1 고용보험 .....	47
3.3.2 산재보험 .....	49
3.3.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51
3.3.4 사례별 4대보험료 미지급 실태 .....	55
3.3.5 문제점 .....	62
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및 문제점 .....	64
3.4.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실태 .....	64
3.4.2 문제점 .....	67
<b>제4장 개선방안 .....</b>	<b>75</b>
4.1 하도급대금지급제도 개선방안 .....	75
4.1.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 감독 강화 .....	75
4.1.2 수급인의 약식기성시 기성산출을 공정보고로 대체 .....	76
4.1.3 수급인의 기성검사 및 대금신청 시기의 일원화 .....	77
4.2 보험료 지급제도 개선방안 .....	78
4.2.1 4대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	78
4.2.2 4대보험료 미지급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으로 간주 .....	78
4.2.3 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정산조항 마련 .....	79
4.2.4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4대보험 별도 항목으로 표기 .....	80
4.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	81
4.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율의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상향 조정 필요 .....	81

4.3.2 지급보증 면제자에 대한 규정의 개선 .....	82
4.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성립 요건의 완화 .....	82
<b>제5장 결 론 .....</b>	<b>84</b>
5.1 하도급대금 지급 개선방안 .....	84
5.2 4대 보험료 지급 개선방안 .....	85
5.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개선방안 .....	87
<b>참고문헌 .....</b>	<b>89</b>
<b>부 록 .....</b>	<b>90</b>

## - 표 목 차 -

〈표 2-1〉 선급금 관련 법률 내용 .....	7
〈표 2-2〉 기성산정 및 지급방법 관련 법규 비교 .....	11
〈표 2-3〉 4대 사회보험 관련법 조항 및 내용 .....	13
〈표 2-4〉 건설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하도급계약통보서의 4대 보험료 항목 추가) .....	16
〈표 2-5〉 4대 사회보험 적용단위 및 보험료율 .....	24
〈표 2-6〉 4대 보험료 산정방식 .....	25
〈표 2-7〉 밀러법의 공사규모별 지급보증 비율 .....	31
〈표 2-8〉 캘리포니아 리틀 밀러법의 지급보증 비율 .....	32
〈표 3-1〉 면담조사 개요 .....	36
〈표 3-2〉 건설관련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	37
〈표 3-3〉 수급인의 선급금 수령시 하수급인의 수령 실태 .....	38
〈표 3-4〉 선급금 미수령 하수급인 비율 .....	39
〈표 3-5〉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후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평균소요일수 ..	40
〈표 3-6〉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통보방법별 분포 .....	40
〈표 3-7〉 하도급공사의 목적물 인수 후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41
〈표 3-8〉 기성공사대금의 수령기간 .....	41
〈표 3-9〉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수령후 15일초과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42
〈표 3-10〉 2008년 상반기 자금 상황 악화 이유 .....	43
〈표 3-11〉 국내 공공공사 기성 첨부 서류 .....	45
〈표 3-12〉 하도급계약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공정 계약조항의 내용 .....	47
〈표 3-13〉 하도급공사의 고용보험 가입실태 .....	48
〈표 3-14〉 수급인의 고용보험료 징수시 하도급 기성금 공제실태 .....	49
〈표 3-15〉 전문공사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	49
〈표 3-16〉 전문공사의 산재보험가입 추이 .....	50
〈표 3-17〉 하도급공사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	50
〈표 3-18〉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여부 .....	51

〈표 3-19〉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가입 이유	52
〈표 3-20〉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계상여부	53
〈표 3-21〉	하도급계약시 공사금액대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계상비율	53
〈표 3-22〉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계상형태	54
〈표 3-23〉	공공공사의 사후정산제 적용사실 인지여부	55
〈표 3-24〉	향후 사후정산제도 필요성 여부	55
〈표 3-25〉	수급인별 보험 지급 내역 현황	56
〈표 3-26〉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현장별 보험계약내용 상세	58
〈표 3-27〉	하수급인 K사의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 내역	61
〈표 3-28〉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교부 현황	65
〈표 3-29〉	일부 공사에만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비율	66
〈표 3-30〉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66
〈표 3-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 기준	69
〈표 3-3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 기준	69
〈표 3-33〉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 수수료율의 추정	70

##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	5
[그림 2-1]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 기간 .....	11
[그림 2-2] 4대 보험 관련법령 개정 추이 .....	15
[그림 2-3] 미국의 하도급대금지급 보호 제도 .....	30
[그림 2-4] 미국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 개요 .....	33

##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의 건설생산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되어감에 따라 건설생산 조직을 구성하는 횡적·종적 네트워크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종적 네트워킹 즉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보유한 유능한 하수급인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지 않고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sup>1)</sup>. 양적으로도 건설 분야의 하도급 생산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 종합 건설업체 완성공사원가 중 ‘외주비’ 항목의 평균비율은 55.43%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이다<sup>2)</sup>.

하도급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급인은 우수한 하수급인을 확보하고 건설과정을 보다 효율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성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 원·하도급 관계의 공정성과 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건설하도급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도급거래는 수급인에 대한 하수급인의 종속적 지위에서 기인하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Prime-contractor)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정의와 같다.

하수급인은 앞에서 정의한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Subcontractor)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정의와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로 표기하고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제3항)

2) 대한건설협회(2008), 완성 공사원가 구성 분석, p. 5, 발주기관 또는 시공능력별 외주 비율에 관한 사항은 pp. 6-16 참고

는 본원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공정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의 거래관행은 거래의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원·하도급 업체 간의 지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공사대금이다.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 경제적 수익 창출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인은 불공정거래를 통해서라도 수익을 더 확대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반면 하수급인은 왜곡된 거래문화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용인하게 된다. 즉 하도급대금은 원·하도급관계를 성립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불공정거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경기변동기에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수급인들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유인을 강하게 느껴 최근과 같은 경기하강기의 불공정거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하수급인 또한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공식적으로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수급인이 어려울 때 불공정거래를 감수하는 것이 의리 있는 협력업체로 인정받아 나중에 공사물량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 조사 내용중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선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49.3%, 기성금 수령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70.7%,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수급인으로부터 대체로 계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55.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가 57.0%로 하도급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여전히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3)</sup>.

3)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이처럼 건설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의 자각을 통한 관행개선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계약은 물론 사적계약의 영역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행위자의 행태를 개선하는 노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하도급불공정거래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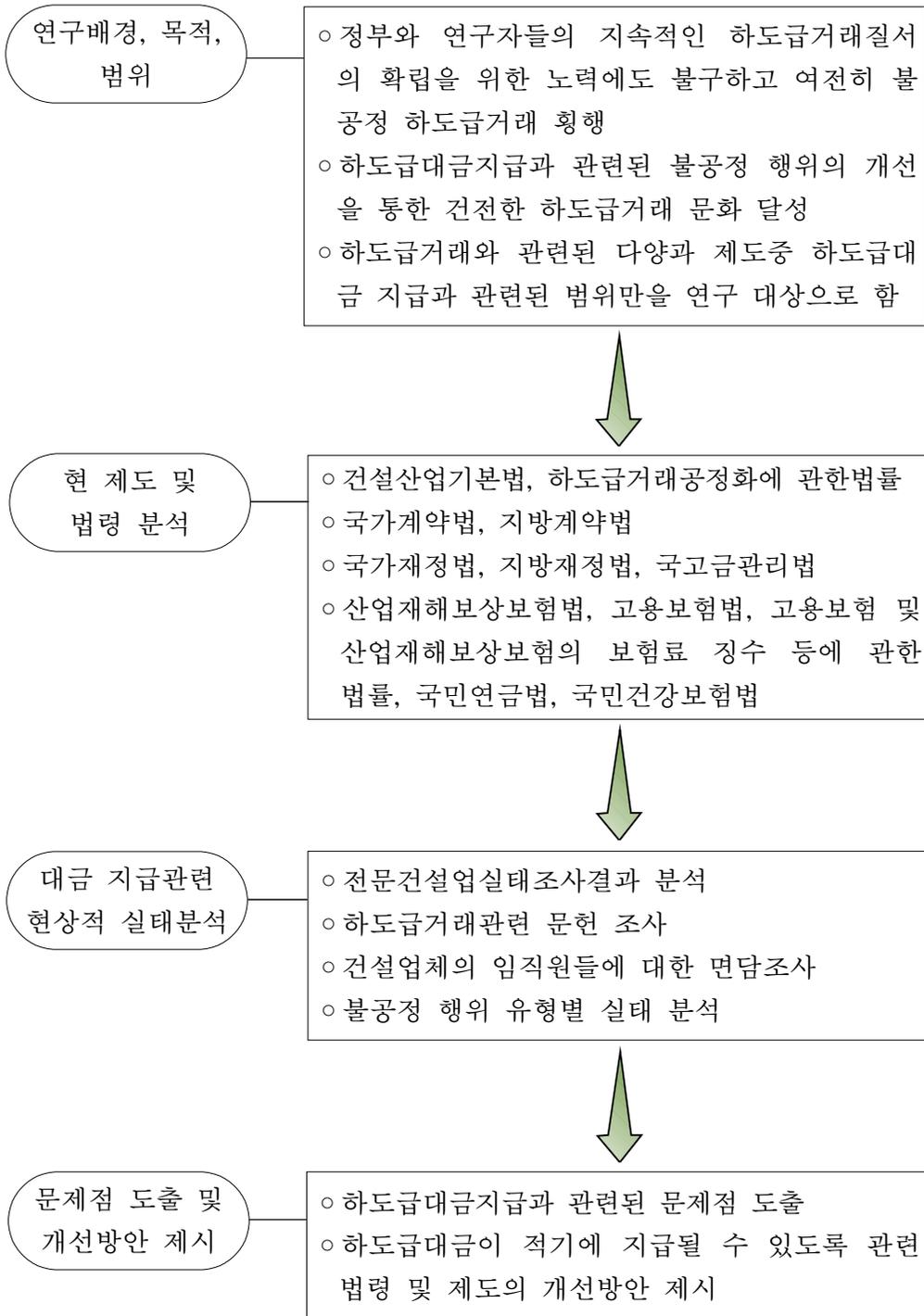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하도급대금지급에 관한 제도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제도를 조사하고 거래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하도급거래의 가장 본질적인 동기이자 핵심적인 요소는 하도급대금이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에 관한 표준적인 거래규범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과 그 담보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규범은 지급방법, 지급시기, 직접지급 등 주로 절차적 규정을 위주로 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규범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한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제도와 지급을 담보하는 제도를 연구범위로 삼는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종류별로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구성항목 중 최근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4대 보험료를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제도분석과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 및 담보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주요 절차 및 내용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 2.1 선급금·기성금·준공금

### 2.1.1 선급금

선급금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자재구입비 등 본격적인 공사착공 전에 발주자가 지급하는 준비자금을 말한다. 모든 건설공사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생산설비와 인력이 사전에 갖추어져 있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시공에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의 투입요소의 조달과 가설물 설치를 위해 큰 규모의 초기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공사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건설공사가 대형화되면서 초기투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그리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하여 초기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법령도 선급금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하도급단계의 선급금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수급인(하도급법의 원사업자에 해당)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하도급법의 수급사업자에 해당)이 자재의 구입이나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하도급법 제6조제1항 참조). 특히 하도급법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과 함께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표 2-1〉 선급금 관련 법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조항	제34조제4항	제6조제1항
내용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수급인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는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2.1.2 기성금 및 준공금

기성금 또는 기성대금은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완공한 부분에 대해 지급 받는 대가를 말한다. 기성금은 장기간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사자금의 원천이 되며, 발주자에게는 공사에 투입되는 자금 흐름과 직접 관련되므로 이를 청구 또는 지급하는 시기와 주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계약조건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성금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시기 또는 주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따라서 기성이 완성된 수준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준공금 또는 준공대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기성금과 마찬가지로 계약조건에 청구 및 지급시기와 방법, 시정조치, 지급지연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sup>4)</sup>

지급기한 및 지급기한 지연에 관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15일 이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하여 기성금 및 준공금의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하도급법 제9조제2항).

한편, 하도급대금지급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100분의 4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20%<sup>5)</sup>)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3조제8항, 선급금 등의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하도급법은 계약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설공사는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초의 하도급대금 내용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이 고정불변할 경우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일방이 불

4) 김예상(2008), 건설제도 및 계약, 보문당, p.268.

5)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5%에서 20%로 인하하였음(2009.9.15)

공평한 부담을 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 하여야하며, 발주자로부터 수급인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이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도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6조). 특히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도 있다(하도급법 제16조의2). 국가계약법도 정부계약에 의한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참조).

하도급대금은 공사대금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하위단계에 위치한다. 즉 하도급대금은 통상적인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도달한다. 따라서 발주자,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으로 흘러가는 전반적인 공사대금 흐름을 파악할 때 하도급대금에 관한 이해가 명확해진다. 정부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국가계약법령은 기성검사, 공사대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령은 기성에 대하여 감리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정하고 있다. [그림 2-1]과 <표 2-2>는 국가계약법령과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성주기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을 참작하되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기성검사는 크게 정식기성과 약식기성의 2가지로 구분되는데, 매 3회째 기성신청은 정식기성으로 처리하고 그 사이의 두 차례는 약식기성방식이다. 2회 약식기성과 1회 정식

기성은 종전과 달라진 부분인데(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제7항 1996년 12월 31일 신설), 일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기관은 이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중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은 약식기성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기성마다 정식기성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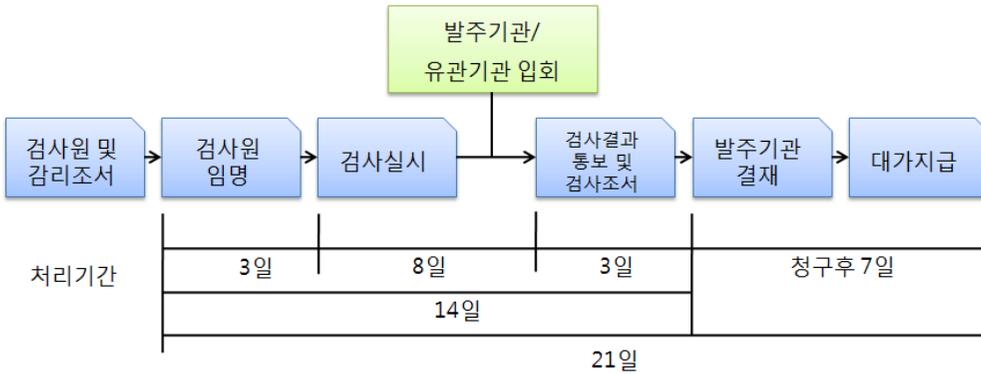
기성검사부터 기성금을 받기까지의 소요되는 날을 산정하면,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 후 검사결과는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하도급법 제9조제2항).

기성대금은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 즉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성검사 시작부터 기성대금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21일이 소요된다. 단, 기간내 토요일, 일요일은 산정하지 않는다. ([그림 2-1] 참조)

게다가 기성검사와 별도로 기성검사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받은 후 기성대금을 청구하는 2원화된 방식으로 그 기간이 더욱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6) 이영환, 최석인(2009), 공공건설 현장 기성 처리 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 건설이슈포커스, p.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림 2-1]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 기간

<표 2-2> 기성산정 및 지급방법 관련 법규 비교

항목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감리업무수행지침)
기성 검사자	감독·검사 직무 겸임불가 30일 약식 기성검사수행시 감독관(상주감리원) 수행 3개월마다 수행시 검사관(비상주감리원) 수행	검사관(비상주감리원)에 의한 검사 약식기성검사는 감독관(상주감리원) 수행 가능
기성검사 절차	구체적인 절차는 명시하지 않고 해당 발주기관별로 지침 작성	기성부분검사원 접수→감리원→감리회사대표자→ 검사원임명→기성검사→감리회사 대표자→검사결과 발주처 통보
기성검사 소요기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후부터 14일 이내 (토, 일요일은 산정하지 않음)	계약상대자통보로부터 14일 이내 [검사원 임명(3일)→기성검사 실시(8일)→검사결과 통보(3일)]
기성대금 지급기간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기성지급 주기	30일 마다 지급 기성검사 3회마다 정식기성검사 1회	기성주기 미언급 기성검사 종류는 국가계약법 준용

※ 이영환 외(2009), 이성락(2004)의 기성관련 법규 참조

이처럼 분기마다 지급되는 기성금에 대한 보완으로 국내 공공기관 건설사업의 경우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한 기성고 산출방법을 채택해 기성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산하 공공 발주기관은 별도의 기성고 공정표와 대표물량 중심의 기성고 산정방식<sup>7)</sup>을 채택하여<sup>8)</sup> 기성에 드는 수고를 덜고 있다.

## 2.2 4대 사회보험

### 2.2.1 4대 사회보험의 개요

#### (1) 개요

4대 사회보험이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이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을 통칭하는 말이다.

4대 보험을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및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이 있으며, 각 보험별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이 있다.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2-3>은 4대 보험에 관한 근거법령과 간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7) 대표물량 중심의 기성고 산정방식은 대표공종의 기성물량을 검사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기성관리용 예정공정표를 개발, 약식기성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8) 이영환, 최석인(2009), 공공건설 현장 기성 처리 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표 2-3〉 4대 사회보험 관련법 조항 및 내용

구 분	관련법	
	관련법 조항	주요 내용
공통	-국가계약법령중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10호 -지방계약법령중 지방자치단체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작성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4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1항, 제26조의 2항, 시행규칙 제26조 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담감액의 금지)2항8호	-건설공사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무적으로 가입 요구되는 보험 정의(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및 계상, 초과 지출된 보험료 정산,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 항목을 신설 -각종 보험료 등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담감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8호, 3항	-고용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등 전반적인 내용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등을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담감액 행위로 정의 및 부담감액에 대한 연체금리 명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등종합관리 <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 전반적인 내용과 보험료율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국민연금 전반적인 내용과 보험료율 -초과 지급된 보험금액 사후정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63조, 67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건강보험 전반적인 내용과 보험료율 -초과 지급된 보험금액 사후정산

## (2) 4대 보험 관련법령 개정 추이

건설산업기본법의 4대 보험관련 내용은 계속 변경되어 왔다. 개정의 기본방향은 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은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4대 보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계약통보서에 명시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2007.12.31 신설)에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4대 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계약통보서 서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제23호)이 <표 2-4>와 같이 개정되었다(2008년 12월 31일자). <표 2-4>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4대 보험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이는 [그림 2-2]와 같다.

### 의무적 부담비용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시행 2005. 7. 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험 소요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5조 1항[시행 2005. 7. 1]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등의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 하도급공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보험료 등의 비용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령 제26조 [시행 2008. 1. 1]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동조 제1항)
-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등의 비용을 확인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제출된 보험료 등의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동조 제2항)



###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 4대 보험료 항목을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1항[시행 2009. 4. 1]

-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발주자가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여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명확히 반영되도록 함

### [그림 2-2] 4대 보험 관련법령 개정 추이

〈표 2-4〉 건설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하도급계약통보서의 4대 보험료 항목 추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① 공 사 명						
수급인	② 상호 및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④ 하도급 사유					
하수급인	⑤ 상호 및 대표자					
	⑥ 업종 및 등록번호					
	⑦ 영업소 소재지					
	⑧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내용	⑨ 공 종					
	⑩ 하도급내용(율)					
	도금액(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하도급율:					
	⑪ 하도급내용(예정·변경)일		⑫ 하도급공사기간		착공(예정) : 준공(예정) :	
	4대 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⑬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일괄 <input type="checkbox"/>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input type="checkbox"/> 일괄 <input type="checkbox"/> 개별
	⑮ 국민연금보험					
	⑯ 국민건강보험					
	⑰ 퇴직공제부금					<input type="checkbox"/> 일괄 <input type="checkbox"/> 개별
* ⑬ ~ ⑰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음영부분은 하도급계약통보서의 4대 보험료 항목의 별도 표시를 나타냄

## 2.2.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또한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의 범주를 넘어서 근로자 재취업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 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어느 한쪽이 아닌 쌍방이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직시 일정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수령을 통해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스스로가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일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근본목적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그의 소득원천을 상실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일정수준의 노동력을 유지·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가입하고 보험료는 사업

주와 근로자가 모두 부담한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13조).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해 적용되며, 도급사업일 경우 그 수급인(원도급업체)이 사업주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납부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시행령 제7조). 즉 고용보험은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료 납부 인수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수급인이 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가입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수급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업무를 떠넘기고서는 보험료는 반영해주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sup>9)</sup>,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은 아래와 같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제3항)

- 
- 9) 제57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위반행위의 중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1조·제17조 및 제19조 위반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법 제50조제1항 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법 제50조제1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0조제1항 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법 제50조제2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2.2.3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

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즉,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나 질병을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강제적 성격의 보험으로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보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라 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함은 물론,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의 장애상태에 따라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지급한다.

산재보험은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근로자로 인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사업장이나 건설공사에 있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며 보험료 산정은 각 적용 사업장의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액수이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임금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 총액을 결정하게 된다.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발주단계에서 전액 원가에 계상되어 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산재보험 역시 고용보험과 같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57조). 또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보험 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게 제출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산정 납부해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그러나 자진해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소급납부, 가산금,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급납부 즉, 자진해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 근로복지공단이 과거 3년 치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연체료<sup>10)</sup>, 가산금<sup>11)</sup>,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 발부 후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보험료를 충당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제28조1,2항).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동시행령 제7조).

## 2.2.4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이하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1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10) 연체금이란 납부기한까지 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다.

11) 가산금이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신고기한인 다음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또는 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 법정기한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 징수하는 것으로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통적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현장별 근무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적용단위는 기업과 개인을 모두 고려하여 적용하며 보험료 징수는 기업단위로 부과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법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민연금법 제13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에 의거 발주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보다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사후정산'할 수 있다. 사후정산이란 입찰자가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발주자가 예정 가격 작성 시에 결정한 일정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발주자는 건설공사 준공 시에 도급업체가 납입한 보험료만큼 사후정산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사업주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기초하여 계약서에 계상된 사회보험료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그러나 사후정산 제도의 적용대상을 발주자가 계상한 보험료가 실제 사용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보험료가 계상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는 제외되고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보험금액 정산방식은 국민연금의 경우 직접노무비 $\times 4.5\%$  $\times$ 상시근로자비율(58.51%) $\times$ 연금가입대상 근로자수 비율(91.9%)이며, 건강보험

의 경우 직접노무비×2.54%×상시근로자비율(58.51%)이다.

## 2.2.5 종합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적용단위, 근로자 기준 적용대상, 가입의 무자, 국토해양부 고시율, 보험료 기준 및 부과기준, 보험료율<sup>12)</sup>은 <표 2-5>와 같다. 사업장의 경우 4대 사회보험 모두 1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공사에 한해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기준에 대해서는 피보험 관리가 없는 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고용보험은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범위 내에서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2, 10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

12) 보험료율이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2-5〉 4대 사회보험 적용단위 및 보험료율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기준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기준 적용대상	모든 근로자 (월60시간 이상)	모든 근로자	1월 이상 근로자 (월80시간 이상)	1월 이상 근로자 (월 80시간 이상)
징수	가입의무자	수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국토부고시율*	1.30%	3.40%	2.43%	협1.49%
	보험료기준	노무비율	노무비율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반영	보험료 부과기준	임금총액	임금총액	표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보험료율	사업주: 0.7~1.3%	사업주: 3.4%	사업주: 4.5%	사업주: 2.54%
		근로자: 0.45%	근로자: ×	근로자: 4.5%	근로자: 2.54%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5 호(적용기간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고용보험료 요율의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1등급 1.17, 2등급 0.85, 3등급 0.71, 4등급 0.69, 5등급 이하 0.67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가상의 하도급공사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보기로 한다. 공사비 주요항목의 금액은 아래와 같다.

-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11,007,634,000원
- 공급가액: 10,180,000,000원
- 노무비: 6,465,180,500원

위와 같은 가상의 하도급공사에 2009년도 하도급공사 건축노무비율<sup>13)</sup> 32%를 적용하면 이 하도급공사의 전체 보험료는 〈표 2-6〉 과

같이 계산된다.

〈표 2-6〉 4대 보험료 산정방식

구 분	산 식	금 액	비고
산재보험료	$10,180,000,000\text{원} \times 32\% \times 3.4\%$	110,758,400원	수급인이 가입납부 의무자로서 가입 납부함
고용보험료	$10,180,000,000\text{원} \times 32\% \times 1.3\%$	42,348,800원	
국민연금료	$6,465,180,500\text{원} \times 2.43\%$	157,103,886원	
건강보험료	$6,465,180,500\text{원} \times 1.49\%$	96,331,189원	
총 액		406,542,275원	

공급가액이 10,180,000,000원이고 노무비율이 32%인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를 산출하면, 국민연금이 공급가액의 약 1.54%, 건강보험이 약 0.94%에 해당하며, 4대 보험료 합계는 공급가액의 약 3.99%인 406,542,275원이다.

## 2.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금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모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시에 하수급인에게 법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3

13)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의 32%이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5호)

조의2 제1항 참조).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개요

### (가) 개념

조합원이 타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하수급인)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에 따른 채무금을 조합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보증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 참조)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4호, 시행일: 2001. 10. 1)

\*신용평가전문기관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정보(주)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2) 보증서 발급

### (가)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주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내로 하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2의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left(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월수)}} \right)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예시]

항목	공사사례 A	공사사례 B	공사사례 C	공사사례 D
공기	4개월 이내	10개월 (4개월 이상)	10개월 (4개월 이상)	6개월 (4개월 이상)
하도급 계약금액	1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선급금	2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없음
기성주기	-	3개월	3개월	준공시 대금 전액지급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금액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원 - 계약금액의 80%	$(100,000,000 - 20,000,000) \div 10 \times 4$ = 32,000,000원 - 계약금액의 32%	$(100,000,000 - 20,000,000) \div 10 \times 3 \times 2$ = 48,000,000원 - 계약금액의 48%	-100,000,000원 - 계약금액의 100%

#### (나) 보증기간

- 계약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준공금 지급기일을 의미함)까지로 하  
되 대금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계약서상 계약  
이행기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당해어음의 만기일을 대  
금지급기일로 한다.
- 보증서가 발급된 후에 대금지급기일이 확정되어 그 지급기일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간 연장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2.4 미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sup>14)</sup>

### 2.4.1 밀러법

#### (1) 지급보증 개요

미국 연방정부는 건설업체의 부도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연방정부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완성이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예산낭비를 막고 납세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행보증(surety bond) 제도를 도입하였고, 1894년에는 모든 연방정부 발주 건설공사에 완성보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허드법(Heard Act)을 제정하였다.

허드법은 1935년 밀러법(Miller Act C40, U.S.C 270a~270f)에 의해 대체되었다. 허드법은 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이 결합된 하나의 보증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밀러법은 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을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제정 당시 2만5천 달러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되었으나, 1991년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공사로 대상을 조정하였다. 미국의 주정부도 건설공사에 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두고 있는데 이를 리틀 밀러법(little Miller Act)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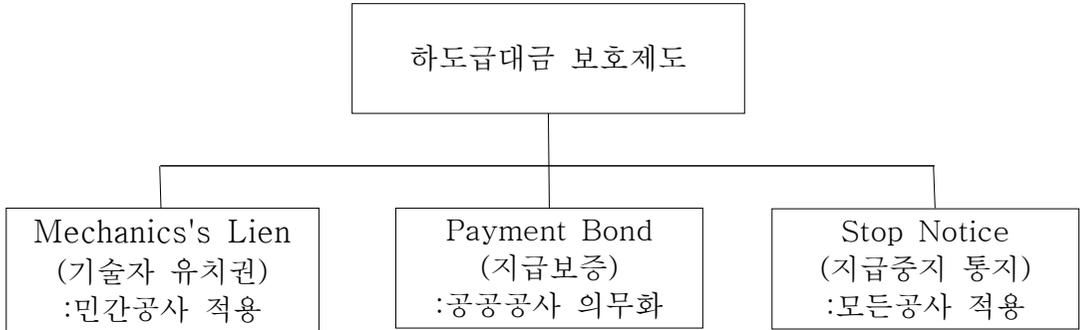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공공공사와 다른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는 하수급인 및 자재공급업자는 기술자유치권(Mechanics's Lien)<sup>15)</sup>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자유치권은 계약상대자의

---

14) 건설교통부(2007),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15) 기술자 유치권(또는 선취특권): 부동산의 건축이나 개조를 위해 노동력 또는 재료를 제공한 사람들을 위해 법이 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빚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

재산권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효용이 크다. 그런데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재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labor and material bond)을 의무화한 것에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 담보제도의 형태가 상이하게 된 것이다.

지급보증과 기술자유치권 외에도 미국은 공공 및 민간공사에 모두 적용되는 '지급중지통보(Stop Not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 청구권자인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중지를 통보하는 즉시, 발주자 또는 금융기관이 청구된 하도급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비 지급을 보류(중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림 2-3] 은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하도급대금보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 미국의 하도급대금지급 보호 제도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범위

밀러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10만 달러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이행보증(performance bond)과 함께 지급보증(payment bond)을 제출해야 한다(40U.S.C. Section 3134~3134, 1988년). 이 규정은 연방정부에 속하는 공공시설물의 건설, 변경 또는

보수 (construction, alteration, or repair)를 위한 모든 계약에 적용되고 있다. 지급보증의 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상이하다. 보증비율은 공사규모에 반비례한다. <표 2-7> 과 같이 계약금액이 적을수록 보증비율은 높아진다.

**<표 2-7> 밀러법의 공사규모별 지급보증 비율**

계약금액	보증비율
- \$100,000 ~ \$1,000,000	- 계약금액의 50%
- \$1,000,000 ~ \$5,000,000	- 계약금액의 40%
- \$5,000,000 이상	- 고정금액 \$2,000,000

※ 공사금액이 2만5천\$에서 10만\$미만인 경우 지급보증의 대안으로 연방조달규정(FAR)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급보호 수단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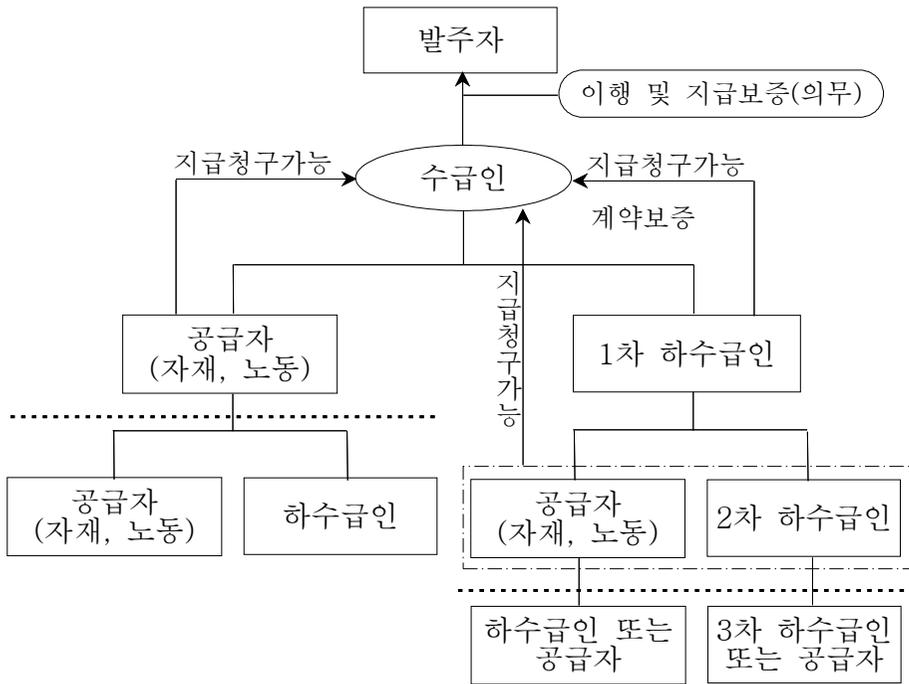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에서도 밀러법과 유사한 취지에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 하는 이른바 리틀 밀러법(little Miller Act)을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건설계약에서도 다양한 보증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공사 이행보증(Performance Bond)과 노임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Labor and Material Payment Bond)이 하도급 계약에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주정부의 이런 노력은 하수급인 및 부품·자재 공급업자를 대금 미결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공공공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표 2-8> 처럼 캘리포니아 리틀 밀러법은 2만5천달러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되는데, 지급보증 금액의 비율은 공사금액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의 지급보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California Civil Code §3247(a)). 단, 공공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토지측량 서비스의 제공자는 수급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르는 보증 제출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수급인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California Civil Code §3248(b))

〈표 2-8〉 캘리포니아 리틀 밀러법의 지급보증 비율

공사 금액	보증 비율
- 2만5천불 ~ 500만불 이하	- 공사금액의 100%
- 100만불 초과 ~ 1000만불 이하	- 공사금액의 50%
- 1000만불 초과	- 공사금액의 25%

대금지급의 보호대상으로는 기술자, 자재공급자, 하수급인, 장비대여업자 등 실제 하도급 건설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업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캘리포니아 민법전에 의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호대상은 기술자유치권, 지급중지통지권의 보호대상과 동일함). [그림 2-4]는 미국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 점선(.....) 이상이 지급보증에 의한 청구권자임.

[그림 2-4] 미국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 개요

### (3) 지급보증에 의한 대금 청구

미국건축가협회의 지급보증서 양식에 의하면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청구권자가 대금 청구를 하는 절차는 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와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맺은 청구권자는 청구액을 명시하여 지불을 요청하는 취지의 청구서(Notice)를 보증회사와 발주자에게 송부하면 된다. 그러나 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하수급인과 계약을 맺은 청구권자는 90일 이내에 청구액과 노동 또는 자재를 공급한 기관명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우선 수급인 및 발주자에게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위의 통지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청구액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에 같은 중

류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서를 송부한다. 그러면 보증회사는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계산하여 45일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통지하고 청구권자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게 주선하여야 한다.<sup>16)</sup>

## 2.4.2 기술자유치권(Mechanics's Lien)

민간공사에 있어서는 공공공사에 의무화 되어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대신하여 하수급인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재를 공급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기술자유치권을 확보함으로써 대금 미지급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담보하는 제도인 유치권은 민간공사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민법전(§3110)에 의하면 유치권의 행사자로는 하수급인, 자재공급업자, 재하수급인 등 하도급과정에서 해당 건설과정에 참여한 거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자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은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엔지니어링 설계업자에게도 행사가 가능하며 이런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설계전문자유치권(Design Professionals)으로 불리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민법전 §3081.1부터 §3081.10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

16) 이의섭(1996), 선진국의 건설보증제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3.1 조사개요

하도급대금지급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 현황을 파악한 후,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원이 수행한 전문건설업실태조사<sup>17)</sup>와 병행하였으며, 면담조사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단, 면담조사대상은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대표성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의 개요는 <표 3-1> 과 같이 2009년 4월 15일~7월 7일 사이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면담조사 대상자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협회로 구성으로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2차 면담조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3차 면담조사는 2차 조사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었던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건설업체 전무 1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7) 전문건설업실태조사보고서의 대중소 규모기업의 구분은 전체 전문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 순으로 정렬한 후 2008년 시공능력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세 구간으로 나누되, 전체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의 30%, 30%, 40%가 되도록 균등하게 나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가장 큰 대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은 135억 이상, 중규모는 135억 미만 44억 이상, 소규모는 44억 미만으로 구분되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였다.

〈표 3-1〉 면담조사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 시기
1차	-전문건설협회 부장 1인 -전문건설협회 대리 1인 -전문건설(D사) 부장 1인 -전문건설(B사) 상무 1인 -일반건설(D사) 부장 1인, 과장 1인	-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전반적인 상황, 하도급대금 관련	2009년 4월 15일
2차	-전문건설(S사, 토공) 대표 1인 -전문건설(K사, 철콘) 전무 1인 -전문건설(D사, 철콘) 부장 1인	- 하도급대금, 4대보험 관련	2009년 5월 28일
3차	-전문건설(K사, 철콘) 전무 1인	- 4대보험 관련	2009년 7월 7일

### 3.2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및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 통계 및 처분현황의 전반적인 불법·불공정하도급 위반행위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조치한 건수는 건설 분야 총 5,026건이었다. 주요 위반항목은 대금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가 8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참조)

〈표 3-2〉 건설관련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구분	'87~'98	'99	'00	'01	'02	'03	'04	'05	계
서면	62	3	5	4	0	1	0	0	75
미교부	(3.0)	(1.1)	(2.7)	(0.5)	(0.0)	(0.3)	(0.0)	(0.0)	(1.5)
대금	896	457	105	51	62	35	45	42	1,393
미지급	(43.5)	(57.5)	(56.8)	(6.3)	(17.2)	(9.6)	(8.9)	(9.0)	(27.7)
어음할인	488	48	54	500	196	209	240	193	1,928
로미지급	(23.7)	(17.6)	(29.2)	(61.3)	(54.3)	(57.3)	(47.7)	(41.5)	(38.4)
자연이자	108	4	4	25	54	74	126	140	535
미지급	(5.2)	(1.5)	(2.2)	(3.1)	(15.0)	(20.3)	(25.0)	(30.1)	(10.36)
선급금미	35	4	3	148	32	31	58	35	346
지급	(1.7)	(1.5)	(1.6)	(18.2)	(8.9)	(8.5)	(11.5)	(7.5)	(6.9)
부당한하 도급대금 결정	6	2	1	1	2	0	1	1	14
	(0.3)	(0.7)	(0.5)	(0.1)	(0.6)	(0.0)	(0.2)	(0.2)	(0.3)
부당감액	7	1	1	3	3	4	3	0	22
	(0.3)	(0.4)	(0.5)	(0.4)	(0.8)	(1.1)	(0.6)	(0.0)	(0.4)
기타	457	54	12	83	12	11	60	54	713
	(22.2)	(19.8)	(6.5)	(10.2)	(3.3)	(3.0)	(6.0)	(11.6)	(14.2)
계	2,059	273	185	815	361	356	503	465	5,02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3.2.1 선급금

#### (1) 선급금의 하도급공사 적용실태

건설업은 선투자, 후회수의 자금운용 형태를 보이며 투자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막대한 초기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공사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이며, 규모의 대형화 및 복잡화로 자재와 장비의 확보, 유지에 투자부담이 많아 적기의 자금조달 능력이 공사이행 및 품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따라서 선급금과 같은 초기의 자금투입과 공사진행에 따라 필요한 기성금의 적절한 조달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선급금과 같은 초기투입 비용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급금의 하도급공사 적용실태를 파악하고자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수급인의 선급금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하수급인 비율은 48.3%로 전체 응답의 약 과반수에 이르고 있어, 선급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급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재구매 등 공사착공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며 기업의 공사대금 부족의 발단으로 후속 공사에도 영향을 끼쳐 심각한 상황을 유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와 원하도급간의 공사대금을 투명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3-3〉 참조)

〈표 3-3〉 수급인의 선급금 수령시 하수급인의 수령 실태

구 분	업체수(%)
선급금을 수령하는 편임	370( 51.7)
수급인이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나 받지 못하는 편임	134( 18.7)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지급받은 사실 모름	126( 17.6)
제대로 선급금을 수령못함	86( 12.0)
합 계	716(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선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공사중 선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공사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전체수행공사의 80% 이상이라는 업체는 13.2%, 선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공사가 20%미만이라는 업체는 37.7%이며, 선급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업체들의 평균 미수령 비율은 31.6%이다.

〈표 3-4〉 선급금 미수령 하수급인 비율

구 분	업체수(%)
20% 미만	20( 37.7)
20% ~ 40%	12( 22.6)
40% ~ 60%	11( 20.8)
60% ~ 80%	3( 5.7)
80% 이상	7( 13.2)
합 계	53(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 3.2.2 기성금 및 준공금

#### (1) 기성금 및 준공금 실태

##### (가)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신청 후 검사결과 통보 기간 및 방법

2006년의 경우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 및 준공검사를 요청 후 법정기한인 평균 10일 이내에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53.3%인 223개의 업체이고 10일 이후에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업체는 46.6%로, 약 과반수에 이르는 업체가 법적 기일 내 검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참조)

〈표 3-5〉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후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평균소요일수

연도별	구분		1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초과		합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2002년	139	40.9	168	49.5	33	9.7	340	100.0		
2004년	144	45.3	154	48.4	20	6.3	318	100.0		
2006년	223	53.3	156	37.3	39	9.3	418	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계열화 실태, 2007

기성 및 준공검사결과 통보방법은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업체가 55.8%, 그렇지 않은 업체가 44.2%로, 검사결과 서면통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구두 및 통지조차 받지 못하는 관행이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참조)

〈표 3-6〉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통보방법별 분포

연도별	구분			합 계
	서면으로 통지	구두로 통지	통지하지 않음	
2002년	43.2%	35.6%	21.2%	100.0%
2004년	37.9%	39.0%	23.1%	100.0%
2006년	55.8%	28.6%	15.6%	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계열화 실태, 2007

(나) 목적물 인수뒤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공사시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법적기일인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업체가 2006년 한해 42.2%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02년, 2004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여전히 하도급대금 지급이 대금지급 기일 내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참조)

〈표 3-7〉 하도급공사의 목적물 인수 후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분 연도별	있었다		없었다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2002년	215	54.8	177	45.2	392	100.0
2004년	176	49.9	177	50.1	353	100.0
2006년	177	42.2	242	57.8	419	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계열화 실태, 2007

(다) 기성공사 대금의 수령기간

하도급공사의 대금수령기간을 조사한 결과 법적 지급기일인 15일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14.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성공사대금 수령기간이 30~60일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아 하도급공사의 기성금 수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참조)

〈표 3-8〉 기성공사대금의 수령기간

(단위 : 업체수, %)

구분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15일 미만	304(44.1)	97(14.3)
15~30일	129(18.7)	101(14.9)
30~60일	195(28.3)	321(47.4)
60~90일	43( 6.2)	111(16.4)
90일 이상	19( 2.8)	47( 6.9)
전체	690(100.0)	677(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라)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현금수령후 15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15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2006년의 경우 36.8%로 2004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 참조)

**〈표 3-9〉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수령후 15일초과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도별 구분	있 었 다		없 었 다		합 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2002년	217	55.8	172	44.2	389	100.0
2004년	171	49.4	175	50.6	346	100.0
2006년	154	36.8	264	63.2	418	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계열화 실태, 2007

**(마) 원도급 단계 기성금, 준공금의 자금 상황**

수급인의 자금상황은 하도급대금 지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의 자금악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다.

수급인의 자금상황 악화 이유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의 조사결과를 보면, 자재비용 및 인건비 증가, 신규 계약 축소가 7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변화 또는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0〉 참조)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더 어려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10〉 2008년 상반기 자금 상황 악화 이유

구분	08년 전체	소 기업	중 기업	대 기업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자재비용 및 인건비 증가	37.0%	37.0%	40.3%	26.3%
신규 계약 축소	34.8%	37.3%	24.7%	0.0%
저가공사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9.3%	10.2%	3.9%	5.3%
금융비용 증가	4.3%	4.0%	3.9%	15.8%
공사미수금의 증가	3.9%	3.5%	7.8%	0.0%
개발사업 분양 저조	3.4%	1.6%	10.4%	31.6%
간접금융의 어려움	3.4%	3.0%	5.2%	10.5%
기타	1.3%	1.2%	2.6%	0.0%
선투자금 증가	1.2%	1.1%	1.3%	5.3%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0.7%	0.9%	0.0%	0.0%
직접금융의 어려움	0.4%	0.4%	0.0%	5.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출처: 대한건설협회, 2008년 건설업 금융실태조사, 2008.10

### 3.2.3 문제점

#### (1) 선급금의 부당한 사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서는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면담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공사의 현장에 노임 및 자재 확보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 또는 타 현장에 전용해서 사용함으로써 하수급인은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 D사 부장 :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자로부터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여 주지 않거나 지급 받은 선급금을 다른 현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후 수급인의 자금사정을 사유로 선급금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하수급인은 초기현장에 필요한 부족한 자금을 은행대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2) 일부 하도급 건설업체의 소극적 자세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상은 하수급인의 행태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선급금 신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경영상 부담, 계약체결시 사전에 선급금지급 배제, 수급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예 선급금의 미신청 등 일부 하수급인들이 선급금 신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면담조사 내용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문건설 S사 대표 : 수급인의 요구나 관계를 고려하여 선급금 지급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선급금 신청에 따른 보증수수료와 담보에 대한 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선급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3) 원하도급간 기성주기의 불일치

조사결과 기성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이상을 과다하다는 공통된 진술이 있었다. 공공공사 기성시 첨부서류의 항목을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일부 서류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들이다.

〈표 3-11〉 국내 공공공사 기성 첨부 서류

구분	감리업무수행지침	이복남(1996)	이성락(2004)
기성 첨부 서류	-주요자재 검사수불부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 사진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실질물량 수량 산출서 -가격산정을 위한 일위 대가표(내역서) -시공부위 표시도면 -시공현장사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측량확인서 -품질시험비 사용내역서 -시공자 지입자재 구입 확인서 -기타	-기성부분 검사원 -수량산출서 -시공부위 표시도면 -내역서 -시공현장사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품질시험비 사용내역서 -사급자재 구매확인서 -감리확인서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하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성검사후 적어도 30일마다 기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과도한 기성서류 준비로 인해 그 기간이 4~45일로 평균 18일 정도가 소요되고 기성청구에서 지급까지 1일이 소요되는 바, 실제 30일 기성주기 적용은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정에 따른 기성분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는데 비해 하수급인은 매월 기성대가를 청구해 수령하고 있다. 이 또한 업체마다 현장마다 인정하는 기성분이 다르고 대금지급 절차나 방법 등에도 차이가 있다. 즉, 법적으로는 수급인이 발주처에 월 1회 기성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성검사 등의 절차 및 기간이 복잡하여 실제로는 분기마다 기성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수급인은 기성주기가 3개월이고, 하수급인은 기성주기가 1개월이므로 차이나는 기간만큼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어음으로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자금력이 부족한 하수급인은 이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일반건설 D사 부장, 전문건설 S사 대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매월 기성을 지급하고 발주자는 분기별로 기성을 지급하므로 자금이 부족하여 어음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인은 발주자의 선금금 30%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자금부족이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기성청구에서 지급까지 소요시간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성주기를 적용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기성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분기단위로 기성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면담조사 결과, 건설업체 전반적으로 업체수 증가, 공사물량 감소, 원가상승에 따른 공사마진 감소,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금사정 악화를 겪고 있어 기성금의 현금지급보다 어음지급이 확대되고 있다.

### 3.3 보험료 지급실태 및 문제점

하도급계약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조항으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지급 조항 삭제(33.4%)가 가장 높았으며, 민원발생시 하수급인 처리부담 조항 신설(26.7%), 추가공사 및 설계 변경시 공사대금증액조항 삭제(24.5%)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대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응답도 15.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대

보험료 전가조항이 주요 불공정 계약조항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2〉 참조)

〈표 3-12〉 하도급계약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공정 계약조항의 내용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물가변동시 공사대금 증액지급조항 삭제	135(33.4)
민원발생시 하도급자의 처리부담조항 신설	108(26.7)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시 공사대금증액조항 삭제	99(24.5)
4대보험료의 하도급자에게 전가부담조항 신설	62(15.3)
합 계	404(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 3.3.1 고용보험

#### (1) 고용보험 가입실태

하도급공사의 고용보험 가입실태 조사결과, 수급인 가입이 60.9%, 사업주 승인신청을 통한 하수급인 가입이 20.7%, 수급인 가입중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킨다는 응답은 10.2%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수급인이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참조)

〈표 3-13〉 하도급공사의 고용보험 가입실태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수급인이 일괄가입	461(60.9)
자율적 승인조건부 하수급인이 가입	157(20.7)
수급인의 강요로 하수급인이 가입	62( 8.2)
수급인 명의 가입후 보험료의 하수급인 부담*	77(10.2)
합 계	757(100.0)

\* 하수급인이 수급인분의 고용보험료까지 납부한 경우임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하도급공사의 고용보험은 하수급인의 사업주승인을 통해 하수급인이 보험업무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표 3-14〉의 결과처럼 수급인의 보험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하수급인은 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하수급인 공사 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하수급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하수급인 기성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실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응답업체의 43.7%가 고용보험료를 기성금에서 공제당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 참조)

〈표 3-14〉 수급인의 고용보험료 징수시 하도급 기성금 공제실태

(단위 : 업체수, (%))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전체
있음	64( 75.3)	73( 48.0)	162( 36.1)	306( 43.7)
없음	21( 24.7)	79( 52.0)	287( 63.9)	394( 56.3)
합계	85(100.0)	152(100.0)	449(100.0)	700(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 3.3.2 산재보험

#### (1) 산재보험 가입 실태

전문건설 원도급공사의 경우 보험가입대상공사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분석결과 2007년에는 모든 원도급수주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의 일괄가입 비율은 69.9%, 공사건별 가입은 25.9%, 대상제외 공사는 4.4%로 조사되었다. (〈표 3-15〉 참조) 산재보험 가입 실태 추이를 보면, 2004년부터 모든 공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6〉 참조)

〈표 3-15〉 전문공사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단위 : 업체수, (%))

구분	업체수(%)
모든 공사 일괄 보험가입	553( 69.6)
공사건별 산재보험가입	206( 25.9)
보험가입대상 대형공사 없음	35( 4.4)
합계	794(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표 3-16〉 전문공사의 산재보험가입 추이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모든 공사 일괄 보험가입	30.7	62.4	70.9	69.6	69.9
공사건별 산재보험가입	64.0	31.2	22.9	25.4	25.9
보험가입대상 대형공사 없음	5.3	6.4	6.3	5.0	4.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공사의 산재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급인의 가입이 79.0%, 하수급인의 가입이 16.4%, 수급인 가입중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킨다는 응답은 1.9%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수급인이 부담해야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참조) 하도급 경우도 대체로 수급인이 일괄가입하거나 하수급인이 자율적으로 별도 가입한다는 업체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수급인의 가입형태가 적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7〉 하도급공사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수급인이 일괄 가입	586( 79.0)
하수급인이 자율적으로 별도 가입	122( 16.4)
수급인의 강요로 하수급인이 별도 가입	19( 2.6)
수급인 명의 가입 후 하수급인이 보험료 부담*	14( 1.9)
합 계	742(100.0)

\* 하수급인이 수급인분위의 산재보험료까지 납부한 경우임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 3.3.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1) 실태조사

##### (가)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이유

법적인 적용대상자인 1개월 이상(월 80시간)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입하지 않음이 67.5%, 가입하였음이 32.5%로 조사되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이 과반수에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18〉 참조)

〈표 3-18〉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여부

(단위 : 업체수, (%))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전체
가입안함	28( 34.6)	57( 40.7)	238( 53.0)	323( 48.2)
가입	31( 38.3)	37( 26.4)	79( 17.6)	147( 21.9)
대체로 가입안함	13( 16.0)	25( 17.9)	91( 20.3)	129( 19.3)
대체로 가입	9( 11.1)	21( 15.0)	41( 9.1)	71( 10.6)
합계	81(100.0)	140(100.0)	449(100.0)	670(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이직이 52.3%로 가장 많았고 일용근로자 가입 거부 18.4%, 보험행정 처리 인력의 부족이 각각 16.8%로 조사되었다. (〈표 3-19〉 참조)

〈표 3-19〉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가입 이유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일용근로자의 잦은 이동	352( 52.3)
일용근로자가 가입 거부	124( 18.4)
보험행정처리 인력부족	113( 16.8)
보험가입절차 복잡	57( 8.5)
기타	27( 4.0)
합 계	673(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 (나) 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계상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계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계상 받지 않는다’ 44.8%, ‘대체로 계상 받지 않는다’ 19.5%로 계상받지 않는 비율이 64.3%이며, ‘계상 받는다’ 21.1%, ‘대체로 계상 받는다’ 14.5%로 계상 받는 비율 35.6%로 계상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문건설업체의 기업규모가 클수록 해당 금액을 계상 받는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소기업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참조)

〈표 3-20〉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계상여부

(단위 : 업체수, (%))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전체
계상받지 않음	18( 21.7)	60( 39.2)	239( 50.6)	317( 44.8)
계상받음	30( 36.1)	39( 25.5)	81( 17.2)	150( 21.2)
대체로 계상받지 않음	13( 15.7)	30( 19.6)	95( 20.1)	138( 19.5)
대체로 계상받음	22( 26.5)	24( 15.7)	57( 12.1)	103( 14.5)
합계	83(100.0)	153(100.0)	472(100.0)	708(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공사금액대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계상비율은 국민연금의 경우 1%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은 1%미만과 1~2%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로 하도급공사금액의 1% 미만으로 국민연금료를 계상 받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금액의 1~5%정도로 건강보험료를 계상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1〉 참조)

〈표 3-21〉 하도급계약시 공사금액대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계상비율

(단위 : 업체수,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1% 미만	49( 36.6)	48( 36.6)
1~2%	8( 6.0)	57( 43.5)
2~3%	53( 39.6)	14( 10.7)
3~5%	14( 10.4)	5( 3.8)
5% 이상	10( 7.5)	7( 5.3)
합계	134(100.0)	131(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하도급공사의 공사원가에 계상되는 형태를 묻는 질문에 국민연금료와 보험료를 ‘별도항목으

로 명시' 한다는 경우가 58.6%, '공과잡비 형태로 명시' 되는 경우가 36.9%, 기타가 4.5%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계상 받는 비율은 과반수를 조금 넘는 58.6%로 많은 수의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2〉 참조)

〈표 3-22〉 하도급계약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계상형태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별도 항목으로 명시	275( 58.6)
공과잡비형태 명시	173( 36.9)
기타	21( 4.5)
합 계	469(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 (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3항의 사후정산제도란 하수급인에게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만큼 차액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금액에 대한 사후정산제도의 인지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60.1%가 '알고 있다',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 는 응답이 39.9%로 조사되어 사후정산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참조) 또한 향후 사후정산제도가 필요한지에 관해서는 69.4%의 업체가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30.2% 업체가 사후정산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의견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 3-24〉 참조)

〈표 3-23〉 공공공사의 사후정산제 적용사실 인지여부

(단위 : 업체수, (%))

구분	업체수(%)
알고 있다	509( 60.1)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 모름	239( 28.2)
전혀 모름	99( 11.7)
합계	847(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표 3-24〉 향후 사후정산제도 필요성 여부

(단위 : 업체수, (%))

구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전체
필요함	35(50.0)	91(35.8)	190(26.4)	316(30.2)
필요없음	35(50.0)	163(64.2)	527(73.1)	725(69.4)
합계	70(100.0)	254(100.0)	721(100.0)	1,045(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 3.3.4 사례별 4대보험료 미지급 실태

하도급현장의 4대보험료 지급현황 사례를 통해 4대보험료 지급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하수급인이 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시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4대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그 건설공사 도급내역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등과는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수급인이 현장설명서에 “공사금액이나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견적하라” 고 하였거나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금액이나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급인은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공사계약시 수급인들이 하수급인들에게 보험료를 전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표 3-25〉는 조사대상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사를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수급인의 보험지급 내역을 표시한 것이다. 수급인들은 A~F 총 6개 업체이며, A~F 업체중 하도급공사 내역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모두를 지급한 업체는 단지 3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표 3-25〉 수급인별 보험 지급 내역 현황

원도급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고용 보험	내역반영	×	×	×	○	○	×	
	기성에서 공제여부	근로 지분	○	×	○	○	○	○
		사업 지분	×	×		○		×
	납부주체	수급인 A사	하수급 인	수급인 C사	수급인 D사	수급인 E사	수급인 F사	
	하수급인에게 지급여부	-	미지급*	-	-	-	-	
국민 연금	내역반영	△	△	×	△	×	×	
	납부율%	직접공사비× 34%×1.68%	노무비× 2.41%		노무비× 2.41%	전액지 급		
	납부주체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에게 지급여부	지급	지급	미지급	지급	지급	미지급	
건강 보험	내역반영	△	△	×	△	×	×	
	납부율%	직접공사비× 34%×0.98%	노무비× 1.4%		노무비× 1.4%	전액지 급		
	납부주체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에게 지급여부	지급	지급	미지급	지급	지급	미지급	

※ 보험액 법정지급액에 따른 내역 반영정도에 따라 ○: 법정지급비율대로 지급, △: 법정지급비율에 못 미치지만 지급됨, ×: 지급되지 않음

\*: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의 경우

사례조사결과 수급인을 대신하여 보험료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험료 지급 및 미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험료를 하도급공사금액 내역에 반영한다고 할 지라도 하수급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표 3-25>와 같이 법정 지급비율에 못 미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보험료가 공사내역에 반영되었다하더라도 지급액은 훨씬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B사의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급된 국민연금액은 국토부고시율인 2.43%에 못 미치는 2.41%로, 건강보험액은 국토부고시율인 1.49%에 못 미치는 1.40%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표 3-26>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현장별 보험관련 계약조건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수급인과 동일한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맺더라도 하도급계약서의 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 내역서, 현장설명서의 4대보험관련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건설사의 5개 현장에서는 4대보험관련 계약중 하도급계약서의 일반계약조건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하도급계약서의 특수계약조건, 내역서, 현장설명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C, F 건설사의 경우,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서에서는 보험관련 내역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후 하도급내역서상 하도급금액 산정을 위한 항목에는 4대보험관련 항목을 삭제한 내역서를 교부 및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 3-26〉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현장별 보험계약내용 상세

현장명	내역	하도급계약서			현장설명서
		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	내역서	
A-1~5 (총5개 현장)	고용 보험	27조에 의거(4) 없음(1)	없음	없음	없음
	건강 보험	없음	없음	내역 산정(4), 없음(1)	없음(1), 직접노무비*1.4%(4)
	국민 연금	없음	없음	내역 산정(4), 없음(1)	없음(1), 직접노무비*2.41%(4)
B-1~7 (총7개 현장)	고용 보험	27조에 의거	갑이 가입, 을은 적극협조	없음	없음
	건강 보험	없음	없음	내역 산정	실비정산 처리
	국민 연금	없음	없음	내역 산정	실비정산 처리
C (1개 현장)	고용 보험	27조에 의거	없음	없음	갑이 납부할 경우 기성에서 공제
	건강 보험	갑은 발주자가 지급한 범위 내에서 별도항목으로 지급, 내역서가 실지금액보다 많은 경우 정산	없음	없음	을이 신고납부, 기성청구시 내역보다 실지금액이 많을시 내역서 한도 내 정산
	국민 연금	갑은 발주자가 지급한 범위 내에서 별도항목으로 지급, 내역서가 실지금액보다 많은 경우 정산	없음	없음	을이 신고납부, 기성청구시 내역보다 실지금액이 많을시 내역서 한도 내 정산
D (1개 현장)	고용 보험	갑이 일괄납부후 기성에서 공제, 을이 하수급인신청시 노동부고시율대로 산정	없음	내역산정	내역서에 구분계상, 갑이 일괄납부후 기성공제
	건강 보험	노동부고시율이상으로 책정후 공사종료시 계약금액 범위내 실사용금액 정산	없음	내역산정	없음
	국민 연금	노동부고시율이상으로 책정후 공사종료시 계약금액 범위내 실사용금액 정산	없음	내역산정	없음

※ 일반계약조건 27조: 갑이 가입을 원칙, 을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이 보험료를 별도 계상한다.(괄호안의 숫자는 현장개수를 의미함)

〈표 3-26〉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현장별 보험계약내용 상세(계속)

현장명	내역	하도급계약서			현장설명서
		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	내역서	
F-1~5 (총5개 현장)	고용 보험	27조에 의거	노동부고시율에 의해 적용공제, 협력업체 환급요청시 증빙,정산	없음	없음(2), 갑이 개산보험료로 일괄납부후 기성공제(3)
	건강 보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4), 갑이 일괄 공제하지 않고 을이 관계기관에 납부(1)
	국민 연금	없음	없음	없음	없음(4), 갑이 일괄 공제하지않고 을이 관계기관에 납부(1)
G (1개 현장)	고용 보험	27조 원칙 (을이 가입할 경우 별도 계상)	근로자 부담분 0.5%를 갑에게 위임받아 원천공제	없음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준함(선납부후정산)
	건강 보험	갑과 을이 각각 가입 원칙	없음	내역 산정	직접공사비×노무비 율×1.77%
	국민 연금	갑과 을이 각각 가입 원칙	없음	내역 산정	직접공사비×노무비 율×3.06%
H (1개 현장)	고용 보험	28조-갑이 가입원칙, 을이 가입한 경우 의무를 다해야함	갑이 일괄납부하고 기성에서 공제, 단 하수급인 인정신청시 예외	내역 산정	없음
	건강 보험	갑과 을이 각각 가입 원칙	갑은 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보험요율로 산정, 내역서 금액이 초과된 경우 갑이 정산 가능	없음	없음
	국민 연금	갑과 을이 각각 가입 원칙	갑은 내역서에 반영된 경우 보험요율로 산정, 내역서 금액이 초과된 경우 갑이 정산 가능	없음	없음

※ 일반계약조건 27조: 갑이 가입을 원칙, 을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이 보험료를 별도 계상한다.

하도급공사시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미지급 규모를 알아보기로 한다.

〈표 3-27〉은 조사대상업체인 하수급인 K가 수급인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 내역을 월별로 작성한 내용이다.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8년 4월 21일부터 2009년 8월 30일이며, 공급가액 10,180,000,000원(2009년 4월까지의 금액 7,784,705,880원), 노무비 6,465,180,500원(2009년 4월까지의 금액 4,943,961,559원)으로 되어있다. 지급 보험료 내역은 조사시점인 2009년 4월분까지이다. 실제 국토부고시율대로 계산한 보험료는

- 고용보험료:  $10,180,000,000\text{원} \times 32\% \times 1.3\% = 42,348,800\text{원}$
- 국민연금료:  $6,465,180,500\text{원} \times 2.43\% = 157,103,886\text{원}$
- 건강보험료:  $6,465,180,500\text{원} \times 1.49\% = 96,331,189\text{원}$  이다.

〈표 3-27〉 하수급인 K사의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 내역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008년 4월	0	0	0
2008년 5월	0	0	4,857,832
2008년 6월	354,590	205,850	5,516,519
2008년 7월	434,920	257,380	5,287,468
2008년 8월	467,320	274,420	4,467,855
2008년 9월	507,820	298,180	5,184,213
2008년 10월	554,850	341,700	7,756,093
2008년 11월	2,599,420	1,703,710	7,229,250
2008년 12월	2,298,350	1,508,300	5,584,627
2009년 1월	1,151,310	764,510	3,315,408
2009년 2월	1,426,490	957,980	3,502,003
2009년 3월	1,302,970	891,070	3,917,760
2009년 4월	1,227,050	812,090	1,942,512
합계	12,325,090	8,015,190	58,561,540
총합			78,901,820

따라서 총 공급가액중 2009년 8월까지의 금액을 제외한<sup>18)</sup>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는 공급가액의 1.014%를 차지한 78,901,820원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미지급에 따른 적지 않은 규모의 금액상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7〉 과 같이 실제 지급한 보험료 총합은 2008건축노무비율 34%와 2009건축노무비율 32%를 적용하여 2009년 4월까지 보험료 미납현황에 따른 총 금액은 78,901,820원에 이르고 있다. 공사종료 기간인 8월 30일까지를 감안하지 않고라도 상당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18) 총 공급가액을 총공사기간 개월 수로 나누어 2009년 4월까지의 공사금액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였다.

### 3.3.5 문제점

#### (1) 4대 사회보험금 미지급 및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의 부재

전문건설업체 면담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실태 문제점으로 하도급대금의 지연 및 미지급보다 4대 사회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즉,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4대 사회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4대 보험료는 별도 계상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내역서상 일반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답하였다.

전문건설 K사 상무: 4대 사회보험가운데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고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더욱이 민간공사 뿐 아니라 관급공사(SH공사 등)의 경우도 4대보험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의 2배 규모로 그 손실액이 상당합니다. 4대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공사비의 약 1.5%정도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규모는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금액상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일반 관리비에 포함시켜 견적할 경우, 공사품질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다음 공사에도 미쳐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게다가 민간공사뿐아니라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4대보험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수급인이 가입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료납부 인수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수급인이 공단에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가입 납부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급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노임의 0.45%를 원천징수해 사업자분 1.30%와 함께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하수급인에게 납부 업무를 떠넘기고 있지만 보험료는 반영해주고 있지 않다.

대형업체들도 고용보험을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어 하수급인인 전문업체들이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은 최근 들어 내역에 반영하고 업체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고용보험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sup>19)</sup>

또한 면담자는 4대 보험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행 하도급자의 4대보험관련하여 별도 명시 등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어겼을 시 제대로 된 처벌조항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금액에 별도의 보험료를 명시해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길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처벌조항이 있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건설 D사 부장: 관련규정에서 “발주자가 민간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원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4대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직접공사비나 일반관리비 등과는 별도 항목으로 꼭 명시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그 보험료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급인이 현장설명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보험료 등에 관한 언급도 없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도 하지 않는 경우나, 현장설명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공사

---

19) 코스카저널 2009.6.12일자 내용 일부 발췌

금액이나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계약하고,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처벌조항이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 (2) 불공평한 사후정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과다 계상되어 지급된 보험료의 불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하수급인이 납부한 보험금액보다 수급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많으면 과다 계상된 금액만큼 환수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반대로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액보다 부족했을 경우 하수급인의 부족한 보험료 차액을 사후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불공평한 상황이다.

전문건설 S사 대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후정산의 세부적인 정산조항이 없는데 일정한 기준없이 정산해서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게다가 수급인이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후정산해서 환수 받지만 반대로 하수급인은 공단에 지급한 보험료보다 수급인에게 받은 보험금액이 적을 때에는 정산하여 수급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어 하수급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 3.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및 문제점

### 3.4.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실태

#### (1) 교부실태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을 거부하기 어려운 반면, 수급인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발주공사와 같은 공공공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공사의 경우 45%, 민간공사 경우 57.0%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부만 교부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비율은 민간공사의 경우 64.3%, 공공공사의 경우 75.6%에 이른다.(〈표 3-28〉 참조)

〈표 3-28〉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교부 현황

구 분	(단위 : 업체수, (%))	
	공공공사	민간공사
교부받은 경험없음	233( 45.0)	261( 57.0)
모든공사에 교부받음	185( 35.7)	112( 24.4)
일부공사에만 교부받음	100( 19.3)	85( 18.6)
합 계	518(100.0)	458(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공공공사의 경우 일부 공사에만 지급보증서를 교부받는 경우 그 비율이 50%이상이라는 업체는 31%로 나타났으며, 20~50%사이라는 업체는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사의 경우는 50%이상인 업체는 35.3%, 20~50%인 업체는 35.3%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별다른 차이가 없이 교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29〉 참조)

〈표 3-29〉 일부 공사에만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비율

(단위 : 업체수, (%))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10% 미만	4( 4.0)	13( 15.3)
10~20%	15( 15.0)	11( 12.9)
20~50%	21( 21.0)	10( 11.8)
50% 이상	31( 31.0)	30( 35.3)
무응답	29( 29.0)	21( 24.7)
합 계	100(100.0)	85(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수급인이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8.1%, 수급인이 금융기관의 신용분류기준 등급상 지급보증 면제업체는 20.8%, 하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수급인의 지급보증에 거부되는 사례가 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견으로 관련규정을 몰라서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함 10개사, 지급보증서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어서 10개사, 직 불처리 4개사 등이 있었다. (〈표 3-30〉 참조)

〈표 3-30〉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지급보증서 미교부 대상공사임	124( 29.0)
수급인의 교부 거부	120( 28.1)
수급인이 지급보증면제 대상업체	89( 20.8)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을 구실로	22( 5.2)
기타	72( 16.9)
합 계	427(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08

### 3.4.2 문제점

#### (1) 수급인의 금융 비용 가중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사실상 발주자가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원가의 한 요소로서 외국에서는 과거부터 이러한 보증 수수료를 발주자의 부담으로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왔다. 모든 하도급 공사마다 지급보증을 한다고 가정시 수급인은 막대한 보증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보증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예정가격에 반영되도록 2004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2006년 1월 10일에 최초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16호)한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2008년 7월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68호)한 기준에 의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③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2007.12.28, 2008.2.29>

현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2008년 7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68호)에 의하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등 직접공사비의 최저 0.037%, 최고 0.052%를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금액별로는 50억(부가세 포함) 미만인 경우 0.050%가 적용되며 50억~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은 0.049%, 100억~300억원 미만은 0.046%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의 산업설비 및 토목공사는 0.037%, 건축공사는 0.041%이며, 턴키 및 대안공사는 0.052%를 적용하고 있다.(〈표 3-31〉 참조) 이와 같이 2008년 7월에 고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수수료는 2006년 1월에 고시된 수수료율(〈표 3-32〉 참조)에 비해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실제의 소요금액보다 부족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의 추정 수수료율에 의하면(이의섭, 2007년, 〈표 3-33〉 참조)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수수료율은 0.073% ~ 0.172%로 나타나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금액보다 실제 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이 2~3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0)</sup> 따라서 현행과 같은 낮은 보증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하기 전에는 수급인이 적법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2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년

〈표 3-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68호)

공 사 규 모		요 율
50억원[조사금액(부가세포함)] 미만		0.050%
50억원[조사금액(부가세포함)] ~ 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49%
100억원(추정가격) ~ 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46%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41%
	토목(산업설비포함)	0.037%
턴키(대안)공사		0.052%

※보증서 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BBB) 건설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발급요율(0.63%)을 토대로 산정됨

〈표 3-3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16호)

공 사 규 모		요 율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포함)] 미만		0.018%
34.6억원[조사금액(부가세포함)] ~ 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7%
100억원(추정가격) ~ 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26%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23%
	토목(산업설비포함)	0.018%
턴키(대안)공사		0.028%

※보증서 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발급기관(건설공제조합)에서 최고 신용등급(AAA) 건설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발급요율(0.28%)을 토대로 산정됨

〈표 3-33〉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 수수료율의 추정

공 사 규 모			총원가 대비 직접공사비 비율(%)	직접공사비 대비 보증수수료 비율(%)	
적격심사 낙찰제	5억원 미만	건축	64.3	0.073	
		토목	59.3	0.079	
	5억원 ~ 10억원 미만	건축	64.3	0.120	
		토목	59.3	0.130	
	10억원 ~ 50억원 미만	건축	64.3	0.117	
		토목	59.3	0.127	
	50억원 ~ 100억원 미만	건축	65.5	0.113	
		토목	60.7	0.121	
	100억원 ~ 300억원 미만	건축	65.5	0.102	
		토목	60.7	0.110	
	최저가 낙찰제	건축공사		48.9	0.121
		토목공사		42.2	0.112
턴키공사	건축공사		48.9	0.148	
	토목공사		42.2	0.172	

## (2) 지급보증 면제 업체의 부도 가능성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4호에서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준이상 의 등급"을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로 고시하고 있다. 즉, 경영상태가 우수한 신용평가 A 등급 이상의 업체는 부도위험이 낮으므로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3.31, 2001.9.29, 2004.4.19, 2005.6.30>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업체의 2008년도 부도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 비하여 건설업체의 부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8월 말 기준으로 건설업체 부도수는 255개로 2007년 8월 말 기준 175개에 비해 46%인 80개나 증가했다.<sup>21)</sup> 2008년 6월 말과 비교해서도 41%(74개)가 증가한 규모였다. 부도업체중 신용평가 A등급의 업체도 다수 포함되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지급보증 면제 대상 업체의 부도는 관련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악화 및 부도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과거의 경우에서도 살펴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였던 동아건설산업(주)의 1998년 워크아웃 개시 이후 부도시 1개월 이내에 연쇄 도산한 협력업체수가 389개사, 피해금액이 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지급보증 면제 대상 업체였던 고려산업개발(주)의 경우는 2001년 부도이후 하수급인의 피해가 495개사에 피해금액이 6,015억원에 이르렀었다.<sup>22)</sup> 따라서 하도급지급보증 면제 대상 업체의 기준에 대

21) “아시아 경제” 2008. 10. 06.

한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건설 B사 상무 : 2008년도 금융위기나 1998년도 IMF 사태 등과 같은 경제 위기시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수급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하수급인의 연쇄도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업체 기준을 신용등급 최상위의 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지급보증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서는 수급인과 협력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등급이상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5, 1999.9.1, 2002.9.18, 2005.1.15, 2005.6.30, 2008.3.14>

1. 수급인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

22)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자료 2000. 05. 26.

2.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삭제 <2002.9.18>
4.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급보증에 면제에 대한 협력업체와의 협력관계 평가결과에 대한 면제기준과 신용평가에 의한 면제기준 등급이 고시되지 않고 있다.

### **(3)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의 실효성 미흡**

현재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약관 제1조에서는 수급인이 부도, 파산된 경우여야만 지급 보증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에 대한 이러한 보증제한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문건설 B사 상무 : 현행 지급보증 제도아래에서는 수급인이 파산, 부도된 경우에만 지급 보증이 이루어지므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의 유예기간인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 보증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 미지급 대금에 관한 하수급인의 지급 보증 신청 권리가 상실되게 됩니다.

하수급인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고도, 부도상태가 아니면서 장기간 동안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의 지급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하수급인이 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요청하여도 수급인이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되지 않았으면 보증이행이 되지 못하여 하수급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당좌 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종합공사 시공건설업의 전부 등록말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로 인하여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하 “보증사고” 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 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2008.09.24 개정)

## 4.1 하도급대금지급제도 개선방안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목적물의 건설한 시공을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단계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도급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대금지급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대금 지급 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4.1.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 감독 강화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급인에게 지급된 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의 지급요령에 계약담당자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법인 통장 내역과 하수급인이 수령한 하도급 대금의 법인 통장 내역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청(국토관리·해양항만·항공)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전담부서를 통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한 공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정부 주도아래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이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적 관리·감독이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4.1.2 수급인의 약식기성시 기성산출을 공정보고로 대체

건설업계는 전반적인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한 경영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게다가 분기마다 지급되는 원도급 기성주기와 월단위로 지급되는 하도급 기성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현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성검사와 기성대금 및 준공금 신청시기를 일원화하여 기성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후 검사결과를 통보하기까지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법정 상황기일인 10일을 넘고 있으며, 기성공사대금 수령도 법정기일인 15일을 한참 지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지급받고 있는 등 기성검사와 기성금 지급기간이 장기화되어 기성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 투입상 매우 소모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성검사 및 기성대금 신청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성금 지급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수급인의 기성금 지급주기

인 30일 이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업무 프로세스를 제거하여 계약자의 비용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기성검사 3회마다 정식기성검사 1회 실시'의 규정에 따라 2회 약식기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복잡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약식기성검사제도의 활용을 위해 약식기성검사시에는 별도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기성검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기성신청시 공정관리에서 진도측정을 한 공정보고<sup>23)</sup>로 기성산출서류를 대체하도록 한다. 따라서 약식기성을 대체할 수 있는 공사개요, 공사주요사항, 공사일정, 공사진도율, 공정표, 공사사진 등이 첨부된 일정한 공정보고 양식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약식기성시 공정보고로 간소화한 만큼 평소 공정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과 안전관련한 서류의 담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검사하는 감독관의 자질 및 업무능력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정보고로 간소화된 약식기성검사는 기존의 기성서류준비로 인해 소모되는 인력, 비용, 시간, 노력을 절감하여 보다 높은 품질시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4.1.3 수급인의 기성검사 및 대금신청 시기의 일원화

하수급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고품질의 건설공사를 적기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순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후 1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고 통보를 받은 후 다시 기성 혹은 준공금을 신청하는 2단계방식에서 공사완료후 7일

23) 통상적인 공정보고는 일정한 양식없이 공사개요, 공사관련 주요사항, 일정보고, 공정율 등을 제출한다.

이내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기성 혹은 준공검사 조서에 기성 혹은 준공대금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대금 지급 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2 보험료 지급제도 개선방안

### 4.2.1 4대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의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의거하여 4대보험료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등과는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4대 보험료를 공사금액의 구성상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금액이나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4대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2.2 4대보험료 미지급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으로 간주

4대보험료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제2항(부당감액의 금지) 8호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사유에 해당된다.<sup>24)</sup> 따라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에 적

24) "1.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

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8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항목을 추가로 명시하여 4대보험료 법적인 미지급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보험료 감액뿐 아니라 보험료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하도급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원사업자가 부당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보험료 지연이자가 지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4.2.3 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정산조항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의 보험료가 실제 지급된 보험료보다 부족할 경우에 대한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평하지 않다. 따라서 지출된 금액이 산출내역서상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에도 그 초과차액을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지급된 보험료의 초과분만을 정산하는 규정에서 법정 보험료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많을 경우 정산하여 그 차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실제로도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노무비율의 경우 국토부고시의 노무비율보다 더

---

에서 공제하는 행위, 6.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높아 실제 보험료 산정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의 경우,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2%로 책정되어있으나 일부 미방조적 업종의 경우 노무비율이 약 50~70%<sup>25)</sup>에 이르고 있어 하도급자의 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사후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2.4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4대보험 별도 항목으로 표기

건산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시 건설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모든 4대보험료 비용의 소요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계약통보서에 명시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계약시 현장설명서, 하도급계약서상 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 내역서 등에서 4대보험료 지급 여부를 각각 다르게 반영하고 있으며 더욱이 실제 하도급계약시에는 4대보험료 별도 지급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하도급계약통보서 또한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계약통보서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항목을 추가하여 별도 표기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실제 4대보험료의 반영요율과 반영금액, 보험료 부담방법 등을 기재하여 보험료가 공사금액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건산법 제22조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1호의 도급계약서에서 명시하는 항목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

25)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2006), 노무비율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p.41.

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항목을 추가로 명시한다.

또한 건설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 등의 소요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조항은 건설공사 원하도급계약에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실제 계약후 하도급내역서상 하도급금액 산정을 위한 항목에는 4대보험관련 항목을 삭제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교부 및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등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이 지급하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에도 하수급인이 4대 보험료항목을 별도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도급내역서에 각각의 4대보험금액, 반영요율, 보험료 부담방법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4.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 4.3.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율의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상향 조정 필요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규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006년 1월에 고시된 기준은 보증서 발급기관(공제조합)에서 최고 신용등급(AAA) 건설업체<sup>26)</sup>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발급요율(0.28%)을 토대로 산정(0.018% ~ 0.028%)된 것이어서

26) 2007년도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보증발급 업체중 신용등급 AAA미만 업체가 전체 2,017개 업체중 1,922개로 97% 였음

공사원가에 반영된 발급금액보다 실제 소요비용이 과다하여 건설업체에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2008년 7월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신용등급 분포실태 등을 감안하여 BBB단계의 신용등급업체에 적용되는 발급수수료 요율(0.63%)을 토대로 지급보증 수수료율이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실제의 소요금액보다 부족한 실정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직접공사비 보증수수료율은 0.073% ~ 0.172%로 나타나고 있어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금액보다 실제 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이 2~3배 규모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되고 있는 수수료율은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 4.3.2 지급보증 면제자에 대한 규정의 개선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한 건설업체의 인력 및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취지의 지급보증 면제 규정은 경제위기시 대형 건설업체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건설업을 더욱 위기에 빠트리는 결과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업체의 신용등급 기준을 최상위 등급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성립 요건의 완화

현행 국내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본문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아니한 경우 에는 보증기관에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제4항).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④갑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아니한 경우 을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은 수급인이 부도, 파산된 경우어야만 지급 보증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고도 수급인이 부도상태도 아니면서 장기간에 걸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도 지급보증이 성립되지 않고 보증이행이 되지 못하여 하수급인의 실질적인 보호가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성립 요건을 수급인이 당좌거래 정지, 파산을 당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의 내용과 같이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금지급기일(준공금 지급기일, 어음의 만기일) 또는 주계약서상의 계약이행기일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간 역시 90일 이상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하도급은 전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으나 경제적 힘에 의한 불균형의 거래 관계라는 근본적 한계로 인하여 수급인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고찰해 볼 수 있겠으나 하도급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과 이유를,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제도중 선급금·기성금·준공금의 지급 제도, 4대 보험료 지급 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1 하도급대금 지급 개선방안

### (1)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감독 강화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의 지급요령중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수급인에게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적기에 전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2) 약식기성시 기성산출을 공정보고로 대체**

수급인의 기성금 지급주기인 30일 이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계 약법의 '기성검사 3회마다 정식기성검사 1회 실시'의 규정중 2회 약식 기성의 간소화를 통해 기성신청시 공정관리에서 진도측정을 한 공정보고로 기성산출서류를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기성검사 및 대금 신청시기의 일원화**

현재 2단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기성검사와 대금 신청 시기를 기성 또는 준공검사 조서에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5.2 4대 보험료 지급 개선방안**

### **(1) 4대 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 필요**

보험료 미지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을 건산법에 추가하여 보험료 지급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 **(2) 4대보험료 미지급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으로 간주**

하도급법 제11조제2항 8호, 3항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사유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와 더불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항목을 추가로 명시하여 법적인 4대보험료 미지급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부당한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별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료 미지급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행위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 **(3) 4대 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정산 조항 필요**

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제2, 3항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정산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부족할 경우에 대한 정산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지출된 경우에도 그 부족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4)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4대보험 별도**

#### **항목으로 표기**

수급인은의 하수급인에 대한 4대보험료의 지급을 위해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계약통보서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항목을 추가하여 별도 표기하도록 한다.

건산법 제22조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1호의 도급계약서에서 명시하는 항목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항목을 추가로 명시한다. 또한 기존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5.3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개선방안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율의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상향 조정 필요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규모에 따라 직접공사비의 일정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현재 실제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금액보다 2~3배 규모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급인에게 금융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되고 있는 수수료율은 신용등급별 실제 보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준하는 수수료율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 (2) 지급보증 면제자에 대한 규정의 개선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한 건설업체의 인력 및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취지의 지급보증 면제 규정은 경제위기시 대형 건설업체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건설업을 더욱 위기에 빠트리는 결과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하도급지급보증 면제 대상 업체의 기준에 대한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면제 업체 기준을 신용등급 최상위 등급의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성립 요건의 완화

현행 건설공제조합 약관상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은 수급인이 부도, 파산된 경우여야만 지급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수급인이 부도상태도 아니면서 장기간에 걸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도

지급보증이 성립되지 않고 보증이행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성립 요건을 수급인이 당좌거래 정지, 파산을 당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의 내용과 같이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금지급기일 또는 계약이행기일 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간 역시 연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과 더불어 하도급가격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금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확대, 하도급계획서제출 제도 및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확대 등 하도급대금 지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원하도급자간의 건전한 상행협력, 대등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전반의 체제 정비와 지속적인 협력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되며, 발주자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의 건전한 원·하도급 관계가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확산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김관보(1997), 건설공사하도급 대금지급관련제도 개선방안, 건설산업연구원.
- 심규범(2005),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건설산업연구원.
- 심규범(2008), 고용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 원·하수급인 분리가입 추진방안, 건설산업연구원.
-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2006), 노무비율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 이성락(2004), 국내 기성관리 실태조사에 의한 정부계약제도의 기성지급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2000),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지급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석사논문.
- 이의섭(200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영환, 최석인(2009), 공공건설 현장 기성 처리 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 건설산업연구원.
- 김예상(2008), 건설제도 및 계약, 보문당.
- 대한전문건설협회(2008),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2007),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하도급계열화 실태.
- 대한건설협회(2008), 2008년 건설업 금융실태조사.
- 대한전문건설협회(2008), 건설산업기본법령집.
- 대한전문건설협회(2008), 국가계약관계법령.
- 대한전문건설협회(20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집.

## 1. 국고금 관리법상의 선금 지급 규정

### (1)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2005.6.30, 2008.9.26>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구입경비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기준일에 전출·출장·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8의2.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해당 국고금
9. 업무 등의 위탁(제8호의2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10.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11. 사례금
12.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13.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14.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5.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6.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대금
  17.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 ②제1항제8호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공무원의 급여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위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8.9.26>
- ③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를 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6>

## 2.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9-11, 2009.6.29)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상의 선금 지급 규정

###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제32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

제 가격이 급등한 경우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만, 제7기술개발투자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각각 각호유 날로부터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 양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⑧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정도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의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제33조제1항제2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

인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6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text{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text{계약금액}]$$

제37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3. 지방재정법상의 선금 지급 규정

#### (1) 지방재정법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용선료·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선금급)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4. 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2008. 7.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상의 선금 지급 규정

###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 I. 총 칙

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선금과 대가의 신청 및 지급

##### 가. 선금 및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이나 대가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되, 동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나. 선금 및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는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II. 계약의 체결

#### 1. 계약의 체결시 유의사항

##### 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한다.

##### 나. 계약의 성립

계약서 작성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며,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다.

## 2. 계약문서

### 가.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나. 계약문서의 종류

- 1) 품의서(계획서가 있는 경우 계획서 첨부)
- 2) 표준계약서(계약상대자와 상호날인, 간인)
  -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물품매각, 공공기관과의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함
- 3)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4)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포함), 규격서(물품)
- 5) 1억 이상 공사는 공종별 물량내역서
- 6) 과업지시서가 있는 경우 과업지시서
- 7) 공정예정표, 착공신고서, 산출내역서
- 8) 감독자를 임명한 경우 임명조서 사본
- 9) 계약보증서(계약기간과 보증기간 확인)
  - 면제자인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10)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
- 11)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12)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자치단체조례)
- 13)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 14)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15)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하도급 계약서
- 16) 하도급 직불을 하는 경우 직불합의서
- 17)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

## Ⅲ. 선금의 지급

---

### 1. 선금의 지급

####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2. 지급대상

### 가. 대상범위

1)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나)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의무지급율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20% 이상	100억원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20억원	10억원 ~ 3억원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미만	3억원미만	

나)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범위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 나. 선금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 가. 기성금의 공제

선금을 지급전 공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나.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 1) 회계연도내 지급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본다.

##### 2) 회계연도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 4. 채권의 확보

##### 가. 채권확보 방법

#####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2) 보증서제출의 면제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따라서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사)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3) 지급각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내지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집행은 제외), 수확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X-2-가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 다.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text{계약금액}}$$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발 주 자 :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보증금 :            원정 (₩    )
  9. 하자보수보증금률 :        %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1. 지체상금률 :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

-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